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권영숙 의원)

의 번 호	19-23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3.

발의자 : 권영숙, 강명숙, 김기석
김종선, 김진천, 장덕준

1. 제안이유

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대상 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의장의 책무 (안 제4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라. 운영 및 장소제공 등 (안 제6조)
- 마. 수료증 수여 및 의회체험 홍보 (안 제7조~안 제8조)

3.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불필요

6. 입법예고 : 2019. 2. 27. ~ 3. 4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 의회체험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대상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구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
2. 의회체험활동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3.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운영 및 장소제공 등)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수료증)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대화와 탐험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 계 법령]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53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]

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